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0나89393(본소), 2020나89409(반소) 판결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0나89393(본소), 2020나89409(반소)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19가단5122069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봉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고명진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윤영훈

변론 종결2022. 9. 27.

판결 선고2022. 12. 20.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19가단5122069(본소),

2020가단5122386(반소)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의 본소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중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3,14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2.부터 2022. 12. 20.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항소,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그중 4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99,909,09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위 돈 중 159,000,000원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대여금을, 예비적으로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있다).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9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6.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0,409,0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2.부터 2020. 11. 26.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가.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도급계약 제34조에 따라 피고에게 2018. 11. 28.

100,000,000원, 2018. 12. 22. 50,000,000원, 2019. 1. 21. 50,000,000원, 2019. 2. 27.

4,000,000원 합계 159,000,000원을 대여하였다(대여금 청구).

나) 피고가 D과 이 사건 제2차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원고가 수행하여야 하는 공사 범위는 이 사건 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와 공사 총괄, 시공사 섭외, 유치원 인가 대관 업무 등으로 정해졌고, 이에 대한 공사대금은 이 사건 제1차 도급계약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대금 1,300,000,000원에서 이 사건 제2차 도급계약의 공사대금 1,000,000,000원 중 이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909,090,909원[= 1,000,000,000원 × (1 - 10/11), 원 미만 버림]을 뺀 390,909,091원(= 130,000,000원 - 909,090,909원)으로 정해졌다. 원고는 위 인테리어 공사 및 공사 총괄 등을 모두 완료하였는데 피고로부터 350,000,000원만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40,909,091원(= 390,909,091원 - 35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공사대금 청구).

다) 만일 위 가)의 대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 159,0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예비적으로 위 돈 상당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가) 원고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돈은 피고가 원고의 지시에 따라 원고 회사 대표이사 F의 개인계좌로 먼저 송금했던 돈을 F가 다시 피고에게 돌려준 것에 불과하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 부분 외의 다른 업무들을 도급한 적이 없는데,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없다. 설령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였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만일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시공사 섭외, 인허가 업무 등 공사총괄 업무를 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책임도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하자보수비 81,422,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주위적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제2.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예비적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사대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 등 자신의 채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보인다.

① 원고는 피고를 대리하여 D과 이 사건 제2차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에도 이 사건 공사에 직접 관여하면서 D과 그 하도급업체의 공사 진행 등에 관한 조율, 관리 및 감독을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뿐만 아니라 D에 지급할 공사대금도 원고의 지시에 따라 원고 대표이사 F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뒤 D에 전달하였다고 하여 D에 대한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서도

원고가 관여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도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 총괄 등의 역할을 아울러 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유치원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연락하는 등 그 신청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유치원에 관하여 2019. 3. 11. 인허가가 이루어졌으며, 유치원에 대한 인허가는 유치원의 개원을 전제로 하므로 그 전에 인테리어가 완성될 것을 요하는 점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 부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완료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공사대금 액수에 관하여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과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원피고는 모두 이 사건 제1차 도급계약 공사대금 중 1,000,000,000원 부분이 이 사건 제2차 도급계약 체결에 따라 분리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제2차 도급계약의 공사 범위는 원고가 수행할 수 없는 건축공사 부분으로 정하여져 있는 점, ③ 원고는 피고를 대리하여 D과 이 사건 제2차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세금을 절감하고 싶다고 하여 이 사건 제1차 도급계약과 달리 공사대금 1,000,000,000원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그 경위를 설명하는 점, ④ 달리 이 사건 제2차 도급계약 체결 당시 원피고 사이에 위 공사대금 1,000,000,000원의 부가가치세 부분 상당 대금에 대하여 그 귀속에 대하여 정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피고가 이 사건 제1차 도급계약과 이 사건 제2차 도급계약의 공사대금 차액만큼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만으로 위와 같이 피고의 요청에 따라 D이 감액해 준 공사대금까지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이 사건 제1차 도급계약 공사대금 1,300,000,000원에서 이 사건 제2차 도급계약으로 분리된 1,000,000,000원을 뺀 300,000,000원(= 1,300,000,000원 - 1,000,000,000원)1) 이다(을 제8호증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서류에 불과하므로 위

증거만으로 달리 원피고 사이에 공사대금에 관하여 그 기재와 내용과 같은 정산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다) 소결론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191,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109,000,000원(= 공사대금 300,000,000원 - 위 변제금 19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하자보수 손해배상 채권 공제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하자보수책임 유무에 관하여 원고는, D은 피고와 별도의 계약에 따라 건축공사를 시공한 것이고, 원고로부터 건축공사를 하도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D 시공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책임을 원고에게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는 D과 공동수급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인테리어 공사 부분을 수행하면서도 이 사건 공사 전반에 관여하여 그 공사 진행을 총괄하고, D 및 그 하도급업체를 관리·감독하며, D의 대금 지급에도 관여하였던 점, ②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공사 전체에 관한 이 사건 제1차 도급계약을 작성한 후에 그 중 건축공사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와 D 사이에 다시 이 사건 제2차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원고는 피고를 대리하여 D과 이 사건 제2차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D과의 계약을 주선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D이 수행한 건축공사의 완성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유치원의 인허가를 받는 것까지가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실질적으로 수행한 업무 및 책임 범위는 비록 건축공사 부분은 D이 수행하는 것이더라도, 건축공사의 완성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유치원 신축공사 및 그 관련 인허가 업무까지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 부분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와 D은 피고에 대하여 공동수급인의 관계에 있는데, 그 형태에 관하여 고찰해 보건대, 원고의 업무 및 책임 범위, 이 사건 제1, 2차 도급계약의 체결 경위에 비추어, 이는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수급2) 형태에 부합하며, 원고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사에 있어 주계약자의 위치에 있었다고 보인다.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수급의 경우 주계약자는 다른 수급인의 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므로, 원고는 D이 수행한 건축공사 부분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진다.]

나) 하자보수 손해배상 액수에 관하여

(1) 인정하는 하자

(가) 이 법원 감정인 G의 감정결과, 감정인 G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하자보수 감정내역서와 같이 각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피고는 조명 등기구 가요전선관 미시공 하자와 관련하여, 시공된 PVC CD관을 철거한 후 재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손해배상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다1897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하자는 이 사건 공사의 전기배선에 관한 도면, 시방서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전기 내선기준에 따라 판단한 것이고, 전기 내선기준은 가요전선관 배선으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있을 뿐이므로, PVC CD관으로 배선을 시공한 것이 중요한 하자라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위 하자는 그 미시공으로 안전상 또는 기능상 지장이 크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이를 재시공하기 위하여 그 하자의 정도에 비교하여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인 그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할 수 없다.

(2) 인정하지 아니하는 하자

이 법원 감정인 G의 감정결과, 감정인 G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아래 표 기재 항목들은 하자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교사실 벽체 및 천장 마감 변경시공	각 항목이 건축허가도면과 달리 시공되었으므로 하자로 보아야 한다.	원고와 피고가 감정신청 당시 사용승인도면을 기준으로 감정을 시행하기로 하였고, 위 각 항목은 설계가 변경되어 시공된 것일 뿐 미시공이나 하자가 있는 시공이 아니어서 건축허가도면과 달리 시공되었다는 점만으로 하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 감정인은 원고와 피고에게 각 항목에 대한 설계가 변경된 사정에 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 한편 이 사건 유치원에 대한 사용승인 등 모든 행정적 절차가 마쳐진 점 / 위 변경시공으로 기능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화장실 천장재 변경시공		
천장 석고보드 변경시공		
계단실 창호 변경시공		
지붕층 천장		

교사실 벽체 및 천장 마감 변경시공	각 항목이 건축허가도면과 달리 시공되었으므로 하자로 보아야 한다.	원고와 피고가 감정신청 당시 사용승인도면을 기준으로 감정을 시행하기로 하였고, 위 각 항목은 설계가 변경되어 시공된 것일 뿐 미시공이나 하자가 있는 시공이 아니어서 건축허가도면과 달리 시공되었다는 점만으로 하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 감정인은 원고와 피고에게 각 항목에 대한 설계가 변경된 사정에 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 한편 이 사건 유치원에 대한 사용승인 등 모든 행정적 절차가 마쳐진 점 / 위 변경시공으로 기능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마감 변경시공		
각층 대피공간 미시공		
각층 대피공간 미시공	건축허가도면과 달리 시공된 부분으로 별도의 고지가 없었으므로 미시공에 해당하고 이를 하자로 보아야 한다.	원고와 피고가 감정신청 당시 사용승인도면을 기준으로 감정을 시행하기로 하였고, 위 각 항목은 설계가 변경되어 시공된 것일 뿐 미시공이나 하자가 있는 시공이 아니어서 건축허가도면과 달리 시공되었다는 점만으로 하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 소방감리 H의 2019. 2.자 소방감리 결과보고(통보)서,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 및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난설비의 피난 기구에는 구조대(자진설비)만 있는 점 / 이 사건 건물은 소방검사필증 등을 받은 점 / 이와 같은 변경시공을 사건 유치원의 구조적 결함이나 기능상 하자라고 볼 수 없는 점

다) 소결론

하자보수 감정내역서의 '하자 항목'란 기재 각 하자를 보수하는데, 별지 하자보수 감정내역서의 기재와 같이 55,858,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55,858,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공사대금은 53,142,000원(= 나머지 공사대금 109,000,000원 - 55,858,000원)이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53,14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9. 6.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2. 12. 20.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중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및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의 본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본소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중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김창현

판사강영훈

판사노태현

별지

- 1) 원고는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의 돈에 대하여 지급을 구하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② 내지 ④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 2) 공동수급인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방식의 공동수급 형태이다.